부 록: OECD의 연금 지배구조 기준

Ⅰ. 지배구조 체계

1. 책임 명시

연기금의 적절한 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연기금에 대한 운용과 감독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금형처럼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신하여 연기금을 보유하는 독립적인 단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법이나 계약 등의 문서상에 연금단체의 존재 목적과 내부 지배구조, 책임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반면, 계약형처럼 연기금이 금융기관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는 갹출금 납입자, 연금가입자, 수급자, 그리고 금융기관 간 맺는 계약서상에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범위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이든 연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설립목적은 그 조직이 관리하는 연기금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의 경우 조직의 주요 목적은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될 것이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갹출금에 대한 책임, 수급권 보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역할 등이 포함하게 된다. 주요 목적과 함께 서류상에 갹출금의 수령, 기록관리(record-keeping), 계리적 분석, 연기금 축적에 대한 기준, 자산운용 전략, 공시, 금융교육 등은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서류상에 기술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연기금의 감독체계는 리스크에 기반(risk based)되어야 하는데,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연기금이 직면하는 리스크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한 자산운용 전략을 도입할 경우에는 소위원회(sub-committee)와 같은 하위 조직이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갹출금 납입자, 연금 가입자, 수령자 등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도 서류상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단체 의사결정자 중 일부를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지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서비스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은 연금단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이사회

연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과 통제는 이사회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사회는 연금단체의 내부에 마련될 수 있지만, 외부에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감독 전반을 수행하는 이사회는 개인(감독이사)이나 단체(감독위원회)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연금단체는 연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감독조직으로 구분된 2층 구조의 체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연금단체의 주요 기능이 연기금의 운용과 감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사회는 감독에만 집중하고 구체적인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연금단체 내부의 전문가나 하위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합하다.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독위원회는 회계감사관이나 계리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독위원회는 연금단체의 지배구조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둘 수도 있는데,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용자, 근로자 등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계약형 구조에서는 연금가입자나 연금수령자들이 정기

적인 미팅을 통해 일부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비록 이사회가 특정 책임을 연금단체 내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였더라도, 최종 책임은 이사회가 지게 된다. 특히 이사회는 연기금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과 동일하게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투자전략을 세우고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이사회의 책임이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하위위원회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책임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책임은 져야 한다. 첫째, 연기금의 주요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며, 연기금의 자산배분, 갹출금에 대한 규정, 위험관리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연기금 운용이 계약서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등의 여부를 감독하고 연금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액수가 지급되는지 등을 감독한다. 셋째, 자산운용 전문가, 회계 감독자, 계리사 등을 선임・해임하고 보상하며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이해관계자들 간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방법, 공시, 투자규제 등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과 관련한 제반 운영이 효율적인지를 감독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가입자에게 디폴트 펀드(default fund)와 같은 적절한 투자전략이 제공되는지, 제시된 투자전략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수료는 투명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제시된 투자전략별로 예상된 수익률 등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까지 감독해야 한다.

3. 연금단체의 책임

연금단체에게는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동시에 감독기능과 조직의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단체가 감독과 운영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용자나 가입자 등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잘못된 감독과 운영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감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과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이를 논의하고, 이러한 미팅에서 합의된 의사결정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물론 미팅 때마다 이루어진 의사결정 모든 것을 수시로 공시하다보면 연금단체의 운영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등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미팅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중 중요한 것은 즉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요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에 보고되어야 하며,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정보들은 정부 감독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선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이 일부 구성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수결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일부 멤버는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령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출 역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선출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임과정에서 선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자들의 연령, 경력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적합성(자격기준)

이사회의 멤버들은 최소한의 적격성 원칙(minimum fit and proper criteria)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탈락 기준 등을 설정하여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절도 등과 같은 범죄자', '자산운용을 잘못하여 다수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자', '개인파산자' 등은 이사회의 멤버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이사회의 모든 기능들을 열거하여 특정 전문인력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파악해서 적절한 전문가가 적시에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투자전략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선임될 당시 제공할 수 있는 투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 멤버들에게도 보수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5. 전문가 자문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거나 내부 하위위원회에게 적합한 자문을 구하도록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기금의 투자나 자산-부채 운영 등에 대해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사회는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선임하는 권한과 함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지배구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산운용, 기록관리(record keeping), 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들을 내부 전문가나 외부의 전문 서비스 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성)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계리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내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특정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6. 회계감사 기능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독관은 연기금의 재무회계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재무회계의 검토 및 검증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연기금의 재무회계를 검증하는 빈도와 범위는 연기금의 규모, 복잡성,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회계감독관은 회계 감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지 여부와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회계감독관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기금의 재무상태와 회계 조직의 운영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감독기구에 보고하는 고발(whistle-blowing)해야 한다. 회계감독관이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성을 감독기구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부 감독기구나 감독자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계리관련 리포트 등에 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회계상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회계감독관은 연금단체, 감독기구,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감독관은 연금단체의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며, 2층 구조의 지배구조하에서는 감독기구에 의해 선임된다. 또는 예외적으로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에서 직접 회계감사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계리사 기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처럼 사용자나 금융기관이 투자리스크와 장수리스크에 관계없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모든 연금제도에서는 계리사가 필요하며, 계리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장수리스크는 연금수령자의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실제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자의 은퇴자산의 충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조차도 계리사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의 계리사보다는 역할 범위가 협소할 수 있다.

계리사는 연금단체에 고용된 직원일 필요는 없으며 자산운용을 직접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일 필요도 없다. 즉, 계리사는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일 수도 있고 외부 전문 계리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전문계리사일 수도 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 계리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도 없다. 만약 계리사가 근로자나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는 연금관련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리사의 기능은 광범위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연기금의 가치를 산정하고 연금지급이 충분히 가능한지 등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계리사는 또한 향후 지급할 연금액이 충분히 적립될 수 있는 갹출금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계리사도 회계감사관처럼 고발(whistle-blowing)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연기금의 적립수준이 최소적립기준(minimum funding requirement)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연기금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감독기구나 감독관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계리관련 리포트 등에 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8. 연기금관리사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연금단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연기금관리사가 선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기금관리사는 연기금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된 연기금관리사를 두는 것은 연기금의 충분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 ·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이다.

연기금관리사는 주로 연기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밖에도 현금관리, 투자 관련 회계와 보고, 연기금 투자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계감독관처럼 연기금의 투자와 관련하여 고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Ⅱ. 지배구조의 메커니즘

1.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 통제

연기금의 운영과 감독은 리스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운영 및 감독의 범위는 연기금의 규모와 형태, 직면하는 리스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하지만 연기금의 규모 및 형태, 리스크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운영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연기금을 운용하고 감독하는 사람 또는 조직의 기능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연기금의 운용과 감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제공 과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작동, 회계 및 재무 보고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마련된 규

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우월한 정보력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섯째, 적절한 리스크 측정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금단체의 내부 구성원이나 외부의 연금계리사, 자산관리사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든 아니면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가)에게 위임을 하여 연금단체의 내부통제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기금 관리 ·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평가결과는 관련 의사결정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기금 관련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된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보고

연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적시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목표하는 바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연기금과 관련한 계리사, 자산운용자, 컨설턴트, 연기금관리사,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보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3. 공시

이사회는 적절한 자료를 모든 관련 경제주체들(연금가입자, 연금수령자, 감독기구, 사용자 등)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연

금가입자 및 연금수령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정보는 '연금가입자와 연금수령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OECD 규정(OEC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embers and Beneficiaries)'에 의거해 기술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기금 운용수익률이나 수수료 등과 같은 정보는 일반 대중이 쉽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62)]

62) 공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를 참고하기 바란다.